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

강서구 고시 제2016 - 64호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,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,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 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
2016. 8. 24.

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

제1조(목적)

이 고시는 "낚시 관리 및 육성법"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8호의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 고시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낚시어선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과 "그 어선의 승객"(이하 "낚시객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영업시간)

- ① 선외기를 설치한 낚시어선과 야간항해장비(레이더 등) 미설치 낚시어선의 영업시 간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로 한다.
- ② 야간항해장비(레이더 등)가 설치된 선내기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03:00 ~ 22:00 까지로 한다. 단, 어선검사증서상 항해가능 시간에 대한 제한(금지)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
- ③ 제2항 단서의 야간항해장비(레이더 등)가 설치된 선내기 낚시어선은 야간항해 안 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- 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-21호에서 정한 어로·항해 금지 해역에서의 어로·항해 금지시간 (22:00~03:00) 준수
 - 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어선장비의 고장, 인명사고,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 등 부 등 이한 사유로 금지시간 중 금지해역으로의 입항을 원할 경우, 어업정보통신국 과 관할 군부대 지휘통제실 및 출입항 신고소에 사전 유선신고 이행 (단, 사전

유선신고 미이행으로 군부대 해안경계 작전간 오인관측/사격발생시 모든 인명, 장비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하여는 낚시어선업자가 책임을 진다.)

- ④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항예정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입항 지연은 영업시간 초과로 보지 아니한다.
 - 1.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로 인한 안전항으로 대피
 - 2. 낚시객의 응급구호를 위한 입항지 변경
 - 3. 낚시어선의 기관 또는 항해장비 등의 고장으로 인한 긴급 구난 조치
 - 4.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입항지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
- ⑤ 타 법령에 의한 통제 및 제한 구역 및 관할부처에 의한 허가를 받은 구역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범위내에서는 해당 부처에서 허용한 영업시간에 따른다. (단, 관할부처의 영업시간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따른다.)

제4조(영업구역의 제한)

-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수역에 낚시객을 안내하거나 선상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1. 3톤미만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이상 수역, 3톤이상 ~ 10톤미만 낚시 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5마일이상 수역 {단, 선외기를 설치한 3톤 미만의 낚시어 선은 가덕도 동두말(위도 34° 59′ 18″ N) 이남 수역}
 - 2. [별표2]에서 지정한 무인도서 등 제한구역
 - 3. 강서구 소재 간출암 및 인공적으로 조성된 시설(테트라포트 등)
 - 4.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정한 부산항 묘박지 내의 수역
 - 5.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통제보호구역, 수산자원관리법, 해사안전법, 원자력안전법, 항만법,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등 기타관계법령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(단, 관할부처에 사전 승인 및 허가 받은 경우에는 허용)
 - 6.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이용가능무인도서를 제외한 무인도서
 - 7.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에 의한 운항금지구역
 - 8. 타선박의 안전운항에 장애가 되는 해역 및 영업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
 - 9. 주인이 영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지 도서

제5조(낚시객의 야영 등)

① 낚시객이 야영을 할 수 있는 도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로 한다. 다만,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.

- ② 낚시어선업자는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하지 아니한 낚시객에 대하여 출항 당일 영업시간 내 출입항신고서의 입항예정지에 귀항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귀항 조치에 불응하는 낚시객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출입항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객이 야영을 하고자 할 경우, 야영장소·낚시객 인적 사항· 긴급상황을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에 관한 사항 및 낚시객의 안전 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해상 대기 위치 등을 출입항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낚시객의 야영을 보고한 낚시어선업자는 일몰 30분 전 부터 낚시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낚시어선을 야영지와 가장 가까운 가시거리 내의 안전한 해상위치에 대기토록 하여야 한다.
- 2. 대기중인 낚시어선의 낚시객에게 선상낚시를 하게 하거나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낚시어선에 허가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3. 낚시객의 구호활동을 위하여 입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출입항신고기관에 보고·조치하고 입항 후 출입항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.
- ⑤ 낚시어선업자는 야영을 하였던 낚시객이 입항지에 귀항한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출입항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에 따른 낚시객 야영의 경우 관계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(수질오염 방지 등)

-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출항에 앞서 낚시객 1인마다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봉투 또는 용기를 지급하여야 하며, 낚시객이 입항한 때 이를 회수하여 분리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낚시객은 "수산동식물의 포획·채취" (이하 "낚시"라 한다)와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쓰레기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지급하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입항시 낚시 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- ③ 낚시객은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미끼 및 밑밥을 사용하여야 하며, 낚시도구 나 미끼를 무단으로 투기해서는 아니 된다. 또한 낚시장소 인근의 어업인 등이 과다한 밑밥 사용에 대한 감량 또는 제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낚시객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수산자원 보호 등)

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필요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규정된 포획·채취 금지기

간 또는 금지체장을 낚시객에게 안내하여야 하며, 금지기간 또는 금지 체장에 해당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·채취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방류토록 안내하여야 한다.

② 낚시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 또는 금지체장에 해당되는 수산 동식물을 즉시 방류하지 아니하고 이를 용기 등에 담아 보관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수산 자원관리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제8조(기타 낚시객 준수사항)

- ① 낚시객은 낚시어선에 게시된 승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낚시객은 선상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.
- ③ 낚시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으로 하여금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을 위반하여 운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낚시객은 승선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,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.
- ⑤ 낚시객은 낚시장소 주변에 쓰레기를 버려서 아니되며, 섬 등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여야 한다.
- ⑥ 낚시객은 승선자 명부 작성 시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 야 하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.

제9조(기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준수사항)

-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낚시어선 선내 낚시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에 앞서 본 고시내용과 다음 사항을 낚시객에게 알려야 한다.
 - 1. 낚시객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.
 - 2. 낚시객은 갯바위등 낚시장소에서 낚시 도중 기상악화 등으로 낚시어선업자가 안전 대피를 위하여 승선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비안전서, 경찰관서, 군부대, 소방서에 인명 대피 요청 신고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낚시어선업자는 선원에게 본 고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하며, 선원의 고시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낚시어선업자가 책임을 진다.
- ⑤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른 구·군 관할 수역에 낚시객을 안내하는 경우 해당 낚시 장소(수역·육역)를 관할하는 구청장·군수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명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⑥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·통신·기관·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 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

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.(안전한 속력의 결정은 해사안전법 제64조제2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)

- ⑦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 명부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⑧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⑨ 민간대행신고소에 출입항 신고하는 낚시어선의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까지 경찰관 상주 출입항신고기관(관할 해양경비안전센터 또는 출장소)에 유무선통신(팩스, 전화, 문자 등)을 활용하여 승선자명부와 출항사실을 전송 하여야한다.(단, 대행신고소장이 대신 명부 등 출항사실을 전송한 경우 행한 것으로 인정한다)
-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어선위치발신장치(V-PASS, AIS 등) 또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,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된다. 단, 출입항신고기관에 통신기기 중단 사유를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타인이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수역에서는 해당 어업권자의 어업행위에 방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숭선정원 등의 게시방법)

① 낚시어선업자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은 [별표1]과 같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고시의 폐지) 강서구 고시 제2012 118호는 이를 폐지한다.

[별표1]

낚시어선 신고확인증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

1. 게시판의 제작기준

가. 재질 :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나. 색상

1) 글씨 : 검은색

2) 바탕 :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- 흰색 승객 준수사항 - 노란색

3)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,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아래(게시방법의 예시)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

2. 게시장소

해당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

3. 게시문

해당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

낚시어선업 신고 확인증(부착)

승객 준수사항

- ※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 제2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 구청장이 고시한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.
- 1.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.
- 2. 승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포획금지체장(체중) 이하의 수산동물 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합니다.
- 3. 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4.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- ·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-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 - 인명구조용 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
 - 폭발물,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일반승객과 함께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
 - 영업시간외 항행,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- ·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, 취사, 야생 동·식물을 반출·입하는 행위
 -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
 - ·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사용하는 행위
- 5. 승객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피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.
- 6. 승객은 승선자명부 작성시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, 낚시 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합니다.

[별표2]

무인도서등 낚시제한(금지)구역 현황

연번	구군	도서명	소재지	면적(㎡)	비고
1	강서구	중죽도	강서구 천성동 산267외 5필지	83,207	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
2	강서구	견마도	강서구 성북동 1474외 58필지	1,468,312	
3	강서구	모서도	강서구 성북동 산341	522	
4	강서구	죽도	강서구 동선동 산38외 1필지	9,460	
5	강서구	입도	강서구 성북동 산192	38,777	
6	강서구	호남도	강서구 성북동 산191	39,669	
7	강서구	토도	강서구 성북동 산190	24,496	
8	강서구	망산도	강서구 송정동 산188	1,289	
9	강서구	유주암	강서구 송정동 산189	198	
10	강서구	대마등도	강서구 명지동 산1외 9필지	386,606	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, 제13조
11	강서구	신자도	강서구 명지동 3225	611,203	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, 제13조
12	강서구	장자도	강서구 명지동 2985	463,197	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, 제13조
13	강서구	진우도	강서구 신호동 179-1외 127필지	982,045	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, 제13조